

**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행정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사진을 3개월 이내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행정자치부 제공>

**●행정자치부령 제60호**

**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**

**2016년 1월 15일**

**행정자치부장관** 

**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**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폐기물 처리·재활용 용역: 100분의 10
13. 시설물 관리·경비 및 청소 용역: 100분의 9
14.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: 100분의 8
15. 여행, 숙박, 운송 및 보험 용역: 100분의 5
16. 장비 유지·보수 용역: 100분의 10
17. 기타 용역: 100분의 6

제2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물품의 제조·구매, 수리·가공”을 “물품의 제조·구매·수리·가공, 용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유류 단가계약 등”을 “유류 단가계약, 폐기물의 운반·처리 등”으로 한다.

제4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

제42조제13호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2호의2”로 한다.

제46조제2항 중 “개봉할 수 있다”를 “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.”로 한다.

별표 2 제8호다목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균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
별표 3 제5호가목 및 제6호나목의 과정금 부과사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 (근로자의 경우 나목을 적용한다)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
- 나.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
별표 4 제7호가목 및 제8호나목의 과정금 부과사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 (근로자의 경우 나목을 적용한다)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
- 나.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
별표 4 제9호를 제11호로,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로,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, 같은 표에 제9호, 제10호, 제12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

가.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	30%
나.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	15%
다.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	9%

10.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

가. 입찰에 관한 서류(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위조·변조·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	15%
나.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(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위조·변조·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	9%

12.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

가.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	30%
나.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	15%
다.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	9%
라.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	4.5%

20.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

가.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	30%
나.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	15%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.

## ◇개정이유

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세분화하고, 각 용역별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며, 폐기물 운반·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◇주요내용

## 가. 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(안 제8조제1항)

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폐기물 처리·재활용 용역, 시설물 관리·경비 및 청소 용역, 장비 유지·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,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5페센트에서 분야별로 각각 5페센트에서 10페센트까지 조정함.

## 나. 폐기물 운반·처리 등의 용역에 대한 지명입찰(안 제27조제2호)

폐기물 운반·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함.

## 다.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(안 별표 2 제8호)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종합평가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정함. <행정자치부 제공>

## 고 시

## ●법무부고시제2016-12호

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.

2016년 1월 15일

법 무 부 장 관

한국명	생년월일	성별	외국국적	등록예정기준지	한국국적 상실일	상실사유
심암	1960.01.11	남	일 본	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5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김경자	1964.05.16	여	일 본	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5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심미수	1991.09.19	여	일 본	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5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심준신	1993.10.06	남	일 본	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5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심상평	1996.02.26	남	일 본	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5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심준사	1998.07.13	남	일 본	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동촌리 1165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김영순	1946.05.01	여	일 본	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510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서가연	1972.06.19	남	일 본	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510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서가대	1969.01.18	여	일 본	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510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
유실구	1996.01.25	남	일 본	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 431	2012.06.11	외국국적취득